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5년 6월 9일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25년 6월 9일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○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에 방청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, 방청인에게 방청 제한 사유를 고지하는 절차가 규정되어있지 않음

※ 사유를 명확하게 모른 채 방청 제한이 된 주민의 불만이 제기 되고,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요인으로 작용

2. 주요내용

○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 제4항 신설(방청 제한 사유 고지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○ **관계법령** : 붙임
○ **조례안예고** : 해당없음
○ **관련부서 협의** : 해당없음
○ **비용추계서**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한받는 자가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문서로 주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(방청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. 1. 흉기나 위험한 물품 등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사람 2.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말 또는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려는 사람 3. 그 밖에 회의장 내외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이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. <신 설>	제55조(방청의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한받는 자가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문서로 주어야 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제97조(방청인의 단속)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·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.